

고 시

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3-208호

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42호(2006. 4. 20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22호(2012. 5. 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325호(2012.11.2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91호(2015. 7. 2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84호(2018. 3. 22.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9-5호(2019. 1. 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4호(2020. 2. 27.)로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환경정비계획(변경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6-29호(2016. 3. 25.)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되고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9-45호(2019. 4. 5.), 제2020-47호(2020. 3. 27.), 제2020-185호(2020. 10. 20.), 제2023-94호(2023. 6. 16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 인가되고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9-192호(2019. 12. 13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1-84호(2021. 4. 30.)로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에 대하여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(변경) 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2월 29일
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나. 명 칭 :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10-1번지 일대

나. 면 적 : 6,106.4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 :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정호진

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0길 18(한강로2가, 다이빌딩 402호)

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23년 12월 21일
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(변경)

용도	대지면적 (㎡)	동수	층수	세대수 (호,실)	건축 연면적 (㎡)	비고
주택	소계	1,783.5725	1	지상18층~지상39층	110	26,518.1616
	분양	1,783.5725			110	26,518.1616
	임대					
오피스텔	730.5428		지상9층~지상15층	77	10,861.7131	
사무소	639.2284		지상4층~지상8층		9,504.0490	
판매시설	456.8563		지하1층~지상3층		6,792.5405	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변경)

공급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(㎡) 공급세대수						상가 면적 (㎡)	그 밖의 건축 시설면적(㎡)	
	계	84.2287	84.2753	105.7501	105.6071	122.8014		오피스텔	사무소
계	110	22	22	22	22	22	6,792.5405	10,861.7131	9,504.0490
토지등 소유자	19	2	1	4		12	5,303.9717	4,263.3331	5,853.6607
보류시설	1		1					116.5236	
일반분양	90	20	20	18	22	10	1,488.5688	6,481.8550	3,128.9102
임대 (기부채납)									521.4781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(변경없음)

구 분	신설			용도폐지		비고
종 류	도로	공원	연결녹지	도로	기타	
규모(m ²)	410.2	1,674.1	411.9	1,577.8	64.9	

라. 기존건축물 철거예정 시기 :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

마. 변경 내용 :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에 따른 건축시설계획 변경, 총 소요사업비 및 수입 추산액 변경

6. 관계서류는 용산구청 도시계획과(☎02-2199-7405)에서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.